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 사업목적 : 지속가능 패션산업을 위한 브랜드 육성 및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지원 ○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4월 예정) ~ 2024. 11. 15.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직접지원) 지속가능 의류 및 잡화 제작비 지원 - (간접지원) 추가 비즈니스·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부문	일반 지속가능패션 부문	초기 지속가능패션 부문
지원구분별 규모	○ 의류(최대 75백만원 × 5개) ○ 잡화(최대 39백만원 × 2개)	○ 의류(최대 55백만원 × 2개) ○ 잡화(최대 27백만원 × 1개)
지원내용	시제품 40스타일 이상	
지원항목	샘플(시제품) 제작비, 원단개발비, 시험성적 및 인증비, 공정무역 생산의뢰비, 마케팅(룩북 등) 비용 등 *인건비 제외,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로 구성	
자부담 금액 (10% 이상)	○ 의류 840만원 이상 ○ 잡화 440만원 이상	○ 의류 620만원 이상 ○ 잡화 300만원 이상
기타사항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수영복 등 특수목적 의상 브랜드 및 소재 관련 기업 제외 ** 잡화 분야는 가방, 슈즈 제품에 한함(아이웨어, 악세서리 등 제외) ***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 초기 지속가능패션 부문 선발 시 적격 브랜드가 없는 경우, 일반 지속가능패션 부문 선정평가 종합 심사점수에 따라 하위 브랜드 대상 초기 부문 지원금 규모로 지급 예정 ※ 초기 지속가능패션 부문의 경우 기존 동일 사업(지속가능패션 제작)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 하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의류(남성, 여성, 공용) 또는 잡화(가방, 신발) 디자이너 브랜드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국내·외 컬렉션 및 수주회/쇼룸 1년(2시즌) 이상 참여 기업(브랜드) - 국내·외 매출실적 1년(2시즌) 이상 제출 가능 기업(브랜드)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 : 공고문 하단 '참가기준' 참고 ○ 지원조건 ① 지속가능 실천 조건 - 시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 및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 ▶ 일반 지속가능패션 부문: 70% 이상 / 초기 지속가능패션 부문: 50% 이상 - 환경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실천을 이행(하기 지원 카테고리 참조) ▶ 일반 부문: 12개 이상 / 초기 부문: 6개 이상 ※ (공통) 3개 영역 이상 선택 필수 - (공통) 그린플랜 제시, 문화적 지속가능 시제품 제작 필수 · 그린플랜: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생산공정/사용 후 폐기물 감축/ 제품 수명연장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문화적 지속가능 시제품 제작: 시제품의 10% 이상을 소수자 친화·유니버설 디자인(범용 디자인) 또는 화합·상생 가치(젠더프리, 사회적 이슈 환기 등)를 포함한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출시해야 함		

- ☞ 전체 컬렉션의 70% 이상(초기 지속가능패션 부문의 경우 50%)을 지속가능 스타일(환경 및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로 제작해야 함
* $[지속가능 스타일 수량 / 총 스타일 수량 * 100] = 70\%$ 이상(초기 지속가능패션 부문의 경우 50%)이 되어야 함
- ☞ 전체 컬렉션의 10% 이상을 문화적 실천 관련 스타일(소수자 친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구성해야 함
* $[문화적 실천 관련 스타일 수량 / 총 스타일 수량 * 100] = 10\%$ 이상
- ☞ 문화적 실천 영역은 지속가능 스타일에 포함됨
* ex) 전체 컬렉션(시제품) 100개 중 지속가능 스타일 70개(문화적 실천 스타일 10개 포함) 이상으로 구성

영역	내용(안)
환경적 실천	1. 친환경 소재 사용(재생가능, 생물학적 분해 가능, 비건 소재 등 기타 환경친화적 소재) 2. 제작과정 개선(식물염색 등) 3. 무게/부피 축소에 따른 원료량 감축 4. 제품의 사용수명 연장(수명주기 관리, 절약/감소/재사용 유도 등) 5. 환경오염 방지(온실가스/탄소배출량 감축, 기후변화 대응) 6. 천연자원 소모 감축 7. 포장 및 물류과정 최적화
사회적 실천	1. 공정무역 2.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방지 3. 윤리적 생산과 소비 도모 4. 판매이익 기부 및 기금 조성, 임직원 캠페인 참여 등
경제/경영적 실천	1. 지속가능 관련 신소재 개발 2. 제품 생산과정/사용후 폐기물 감축(제로웨이스트 등) 3. 에너지 사용 절약 유도 4. 공유경제(대여, 교환, 수선 서비스 등) 5. 공정과정 단축, 경영 및 기술혁신 6. 투명한 정보공개(공정과정 등) 7. 윤리경영, 공정경쟁 등
문화적 실천	1. 정치적, 지역적, 사회적 관념 및 제약을 탈피한 디자인(화합, 상생 가치 포함) 2. 사용편의성 제고를 통한 소수자 친화적 디자인(장애인, 임산부 등)

② 일반 조건

- 국내·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약 기간 내 시제품 40 스타일 이상 제작 후 국내·외 시장 출시
- 시즌 구분 없이 브랜드별 연 1회 지원, 최종 결과평가(11월) 시 제작 시제품 전부 지참해야 함
- 동일 사업 최대 5년 수혜 가능(22년 사업신설)
- 초기 지속가능패션 부문의 경우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02.16.(금)부터 **03.12.(화) 11:00까지 / 28일**
 - 접수 마감 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량 증가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감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ZIP'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업로드**
 - ZIP 외 다른 확장자 압축파일은 확인 불가하며, 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 업로드 외 메일, 우편, 현장 방문 등 다른 방법으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업로드 용량(50mb)에 제한이 있으므로 파일 용량을 최소화하여 업로드 바랍니다.
 - **파일 압축 시, MAC에서 압축한 파일은 파일 깨짐 또는 다운로드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WINDOWS에서 압축하시거나 개별파일로 업로드 바랍니다. (개별파일 업로드 시 용량 제한 주의)**
- 신청서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 ☎02-6676-5100

제출서류

※ 아래 표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면 평가 합격 시 'ESG' 지표 관련 증빙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형식	비고
01	수행계획서	PDF	미제출 또는 인감 날인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02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PDF	미제출 또는 서명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0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미제출 또는 서명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04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목록	엑셀	미제출 또는 참여인력 기재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05	사업자등록증(증명원)	PDF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2023.01.01. 이후 발급 본
06	2022~2023년 매출실적 증빙서류	PDF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수출실적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선택하여 제출
07	포트폴리오	자유	디자이너/브랜드 소개, 록북, 라인 시트 ※ 브랜드 경쟁력 판단을 위해 가급적 필히 제출 ※ 용량 내 동영상 제출 가능 ※ 시즌 기입 필수 ※ 용량 최소화하여 업로드(별도 이메일 제출 불가)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사업비조정을 통해 최종 선정

<1단계> 서면	<2단계> 발표&질의응답	최종 선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평가 1차 통과기준 : 70점 이상 선정과정의 1.5배수 통과	1차 서면 통과과제 대상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디자이너 필수 참석 2차 통과기준 : 70점 이상	- 종합점수* 고득점순 1배수 선정, 사업비 조정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및 협약금액 확정 - 예산 내 예비순위 선정 가능

- 신청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지원 규모의 2배수 미만일 경우 1단계 서면 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1단계 서면 30%, 2단계 발표 7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상위 1배수를 선정, 사업비 조정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및 협약금액 확정
- 평가위원회는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 단계별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함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계산

○ 평가기준(초기, 일반 부문 동일)

- 1차 서면평가

평가지표		내용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A. 수행기관 (1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수행관리체계(일정) 마련 여부	10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등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여부	
B. 참여인력 (10점)	참여인력 적정성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10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및 분야별 전문성(디자인, 세일즈, 홍보 등) 보유 여부	
C.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자부담 포함)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	10
D. 과제기획력 (40점)	과제 이해도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25
	기획 완성도	지속가능 분야 인증마크, 활동 이력 등 보유 여부 및 구체성	
	유통 구체성	유통 및 마케팅 세부 계획(온·오프라인 활용 등)	15
E. 과제내용 (30점)	독창성	제품 내용(디자인, 소재 등)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30
	경쟁력	시장의 타 브랜드 및 제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완성도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생산공정 / 사용 후 폐기물 감축 / 제품 수명연장 계획 및 이행의 구체성·실효성	
합 계			100

- 2차 발표평가

평가지표		내용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A. 수행기관 (15점)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조회 결과(※신용평가사 의뢰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 반영) 신용등급 BBB이상 BB~B CCC CC이하 배점 5점 3점 1점 0점	5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	10
E. 과제내용 (35점)	완성도	기획안의 착수 개시 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등	15
	차별성	제품 내용(디자인, 소재 등)의 참신성과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성	20
	경쟁력	시장의 타 브랜드 및 제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F. 기대성과 (44점)	경제적 성과	기대되는 매출 규모 및 성장 가능성	30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공공성, 투명성, 소비문화 개선 등)	
	목표(성과) 타당성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14
G. ESG (6점)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2점 ※ 일자리 창출 계획 없을 시 0점, 계획이 있을 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 채점	2
	지역기업	주관기관의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사 기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3점	3
	윤리·인권 (종사자 권익보호)	고용인력 권익 보호 규약(정규, 비정규, 프리랜서, 위탁)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정상 제출 : 1점 ※ 일부제출-미제출 : 0점 ※ (서면합격시) 사내 약관, 규정, 지침 등 추가 제출	1
합 계			100

○ 평가 관련 참고사항

- 1차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신용조사]가 진행됩니다.

※ 신용평가서 제출방법 추후 안내 예정

- 1차 서면평가 통과 업체 중 [ESG] 지표 해당 업체(일자리 창출, 윤리·인권)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증빙서류 : 일자리 창출 계획(자유 양식), 고용인력 권익 보호 규약(자체 약관, 규정, 지침 등)

- [신용조사] 및 [ESG 지표]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출 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각각의 서류는 서면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등록 지연 시 2차 발표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등)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참가기준

○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담기관과 협약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 제한 조치 포함)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 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2024년 패션디자인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에 지원한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 디자이너 기준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문의처	
○ 사업문의 : 서수빈 주임(☎061-900-6462, plz@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 진흥원의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내용 기재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 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협약체결 관련 참고사항 - 협약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됨 - 최종 선정 대상은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개인), 통장 사본,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의 사유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진흥원과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지원과제 수행 중 제42조에 따른 지원과제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진흥원은 수행기관에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 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에 근거하여,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진흥원은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결과 보고 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단,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제외
 - * 성희롱 예방 교육 인정 범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 의무교육, 해외 타 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 교육 내용에 한함)